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갯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3.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1월 9일

나. 발 의 자: 임헌호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4일

라. 상정일자: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11. 27.)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임헌호 의원)

가. 제안이유

- 갯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갯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영등포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갯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 본 제정조례안은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갱년기증후군과 관련하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서 갱년기 증후군과 관련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5조(협력체계 구축)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 검토 결과

-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의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조기폐경에 따라 30대에서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지만 주로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진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해 평균 40만명이 갱년기 증상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본 안건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에 대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는 국민의 건강생활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을 고려하여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 | 255 |
| 번 호 |     |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임헌호、신홍식、유승용

우경란 의원(4인)

## 1. 제안이유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영등포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 내용

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안 제4조)

나.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3. 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11. 09. ~ 11. 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